

2020.04.29.(제 103호)

소비자정책

동향

코로나19 관련 정부조치 및 법제 동향

목 차

1. 들어가는 말	01
2. 코로나19 관련 소비자문제와 정부조치	02
3. 정부조치의 법적 근거와 법제 동향	10
4. 나가는 말	17

황의관 선임연구원
(humanright77@kca.go.kr)

1. 들어가는 말

- 작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은 인류에게 큰 위기로 다가 왔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2,956,855명, 사망자는 206,958명(치사율 7.00%)에 이르고 있으며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자가 879,690명이고¹⁾, 우리나라에 한정하더라도 감염자 10,738명, 사망자 243명에 이르고(치사율 2.26%) 격리 해제된 자는 8,764명임²⁾
-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상위 국가에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종래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민주법치국가 중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되기 이전 한국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아 국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적지 않은 검진 숫자와 감염자 숫자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적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적으로 모범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한 국가로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러한 성과를 이룬 한국에 대해 외신의 긍정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³⁾⁴⁾

1) 2020년 4월 27일 기준임.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 최종방문 2020.4.27)

2) 2020년 4월 27일 기준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최종방문, 2020.4.27)

3) 외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주목한 부분은 확진자 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다수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승차검진 포함), 매일 정기적인 대국민 브리핑 등 이었다. 해외문화홍보원(2020.3.23.), '외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은 소비자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조치와 법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법제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대응조치에 대한 파악과 함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례로서 기능할 수 있음
-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치와 그 법적근거 및 법제 동향을 조사 및 검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법제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함

2. 코로나19 관련 소비자문제와 정부조치

- 보건위생용품 수급안정화
 - 코로나19 사태 초기 비말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위생용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에 대한 사재기가 빈번했었고⁵⁾,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음⁶⁾

예찬 잇따라*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34803>, 최종방문 2020.4.13.)

4) 민주주의란 정치체제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가지는 장점을 지적한 외신도 있었음. 중앙일보(2020.3.12.), WP칼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 강점 보여줘”

5) 한겨레(2020.3.3.), 4500원짜리 마스크 이유 있었네...국세청, 52곳 세무조사; 연합뉴스(2020.2.13.),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국내 하루 생산량의 41%”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초기부터 손소독제와 마스크의 사재기가 일부 있었지만, 신천지 사건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수요폭증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수요폭증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매점매석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시행되었음
-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순차적으로 이들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금지, 공급통제(수출통제 포함),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였음
- 코로나19 초기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시장에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들 제품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함⁷⁾
 -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요폭증으로 전면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공급량 중 50%를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하고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⁸⁾
 - 이러한 조치에도 문제해결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조달청·대한약사회 공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2020년 3월 5일 발표 및 시행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정부가 긴급수급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이에선 i) 공급조절 측면에서 공급량 확충, ii) 수요조절을 위한 마스크

6)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생용품의 매점매석행위는 특히 마스크의 경우 문제가 많았고,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각국의 문제로 확대되었음. 마스크의 경우 일회성 용품으로 사용빈도가 높고 특히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필수품인 관계로 이의 수요가 폭증한 측면이 있었음. 각국은 마스크 사재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심지어 사형 처하는 경우까지 있었음. 파이낸셜 뉴스(2020.3.4.), ‘마스크 사재기’ 각국 극약처방... ‘징역 20년·사형·벌금 530만원’ ; 헤럴드 경제(2020.3.4.), ‘각국도 마스크 조달 초비상...’이란, 마스크 사재기에 최대 교수형 등

7) 김윤정, 코로나19 관련 법제이슈 마스크 가격폭등 및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방법과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Issue Paper 20-02, p.11.

8) 김윤정, 앞의 글, p.11

크 공평배분으로 구성되어 있음⁹⁾

- (공급확충) 마스크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현재 하루 평균 1,000만장 수준에서 이를 1개월 내에 400만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 생산량 확대 지원, ② 핵심 소재인 부직포 생산 및 수입선 확대, ③ 생산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적극적 해결, ④ 마스크 및 멜트블로운(MB)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 마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 (공급확충) 수요조절을 위하여 ①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현재는 생산량의 10%까지 가능) ② 공적공급 물량을 총생산량의 80%이상으로 확대하고 20%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 정부에 신고 또는 사전 승인 받도록 조치, ③ 마스크 구매량을 1인 1주에 2매로 한정하고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구매시 신분증 지참해야 하고 3월 9일부터 시행

<표 1> 마스크 구매 5부제 주요사항

날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중 구매 못한 경우,
공통요건	1인 1주 2매 한정, 신분증 지참, 미구매시 구매량 이월금지					

- o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면서 이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벌칙적용을 위해서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전제되어 있어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

9)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약사회(2020.3.5.), 마스크수급 안전화 대책, p2

용 등)을 가능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¹⁰⁾

- 신고사항으로는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 있음

□ 서비스 분야 소비자계약의 위약금 분쟁

- o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조치에 따라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고 등급 최고인 6단계*에 해당하는 팬데믹¹¹⁾으로 선언되면서, 이의 방역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 여행 등 분야에서 소비자분쟁이 발생

<표 2> WHO 전염병 경고 등급¹²⁾

등급	위험내용
1	동물간 전염, 사람은 안전
2	동물간 전염, 사람도 전염가능성 의심
3	동물간 전염, 사람간 전염 확인
4	사람간 전염 확인(초기단계)
5	동물간 전염, 사람간 대량전염 확인(지역/국가수준)
6	동물간 전염, 사람간 대량전염 확인(전세계적 수준)

- o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4,988건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

1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11) 팬데믹이란 전세계적으로 특정 전염성 질병이 최악의 수준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한다.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를, ‘데믹’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전염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령된 팬데믹 선언은 2009년 전세계적 전염병이던 신종 인플루엔자A(H1N1)였다. 당시 신종 플루로 214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해 1만85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컨슈머(2020.3.20.), ‘WHO 팬데믹 선언, 그게 뭐 길래?’

12) 헬스컨슈머(2020.3.20.), 앞의 기사

비 7.8배 수준이었음¹³⁾

- 업종별로 보면, 국외 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항공 여객 운수업, 음식 서비스업(돌잔치 등), 숙박업, 예식 서비스업이었음¹⁴⁾

<표 3>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5개 업종)

(단위: 건)

기간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국내/국외)	예식서비스	합계
'20.1.20~ 3.8(A)	6,887	2,387	2,129	1,963	1,622	14,988
'19.1.20~ 3.8(B)	658	414	99	529	219	1,919
A/B	10.5	5.8	21.5	3.7	7.4	7.8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3.1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i) 코로나19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
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ii)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
면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¹⁵⁾
- o 같은 기간(2020.1.20.~3.8.)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총 61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중 231건(37.6%)을 처리완료하고 34건
(5.5%)은 분쟁조정 절차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처리 중이었음¹⁶⁾
- 처리 완료한 231건 중 136건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95건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또는 신청자 취하 등으로 종결¹⁷⁾¹⁸⁾
- o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앞선 기간(2020.1.20.~3.8.)에 비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감소추세를 이루고 있음¹⁹⁾

1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3.1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1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3.1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1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3.1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1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3.1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1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3.1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18) 2020년 3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전년도 동월 대비하여 보면, 보건·위생용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 및 필터 등의 배송지연과 사업자 연락 두절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으며,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많았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예약 취소 후 환불지연이나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2020.4.16.),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표 4〉 기간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

(단위: 건)

기간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국내/국외)	예식서비스	합계
'20.1.20~ 3.8(A)	6,887	2,387	2,129	1,963	1,622	14,988
'20.3.9~ 3.31	1,045	1,193	428	452	727	3,845
'20.4.1~ 4.10	316	593	161	119	231	1,420
'20.4.11~ 4.27	221	411	80	138	108	958
합계	8,469	4,584	2,798	2,672	2,688	21,211

출처: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내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동향 상시점검,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²⁰⁾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가지는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상 직접적 개입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분쟁을 다루고 있음
 - 이에 위약금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여행업, 예식업 분야의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²¹⁾
 - 다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부 외식업, 예식업체의 약관에 관하여는 공정위가 약관심사를 통한 해당 약관의 무효·수정·삭제가 가능함을 피력하였음²²⁾

19)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내부자료

2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3.1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2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3.1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22) 연합뉴스(2020.3.15.), “과도한 코로나 위약금 약관 고쳐라” ...공정위, 칼 뺐다.

□ 거짓 정보 유통 문제

-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서 대규모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짓 정보 유통과 그에 따른 혼란도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따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시간이 급증하고²³⁾ 이에 거짓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이의 유통속도와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
 - 코로나19 관련하여 생물무기²⁴⁾, 인구조절론²⁵⁾, 5G 전파론²⁶⁾ 등 다양한 음모론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인포데믹(infodemic)으로 부르고 있음²⁷⁾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구 신천지 신도의 확진 후 대구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대구봉쇄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다는 등 거짓정보 유통이 문제가 발생²⁸⁾
-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코로나19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짓 정보유통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행정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감독 및 처벌 조치를 취하고 있음²⁹⁾

23) 미국 내 3월말 페이스북 접속은 전월 대비 27%, 넷플릭스는 16%, 틱톡은 15% 늘었고(뉴욕타임즈), 3월 달 국내 이용자의 넷플릭스 사용 시간은 2월 대비 34%, 유튜브는 16%, 틱톡은 27% 증가했다(와이즈앱)고 한다. 중앙일보(2020.4.20.), 코로나19, '플랫폼 책임'을 묻다...달라진 미 빅테크

24)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경쟁구도에 편승한 음모론으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생물무기라는 주장임. 이에 맞서 중국에서는 반대로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왔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음. 연합뉴스(2020.4.9.), '인포데믹'으로 변이한 코로나19...전 세계 음모론 몸살

25) 미국에서 유통되는 음모론으로 그림자 정부가 전 세계 인구조절을 위해 코로나19를 퍼트렸다는 가짜뉴스임. 연합뉴스(2020.4.9.), '인포데믹'으로 변이한 코로나19...전 세계 음모론 몸살

26) 영국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전파를 타고 코로나19가 퍼진다는 황당한 소문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었고, 5G 기지국에 불을 지르는 방화사건까지 있었음 연합뉴스(2020.4.9.), '인포데믹'으로 변이한 코로나19...전 세계 음모론 몸살

27) 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인포데믹을 경고하는 트윗 글을 게재하였음 연합뉴스(2020.4.9.), '인포데믹'으로 변이한 코로나19...전 세계 음모론 몸살

28) 경북일보(2020.2.19.), 대구·포항·구미,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난무... "모두 거짓"

29) 대구지검 형사3부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는데, A씨는 SNS상에 '00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병원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음. 법제처, 생생법정보/생활 속 법령,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A씨, 처벌은 어떻게? (<https://moleg.tistory.com/5033> 최종방문, 2020.4.2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팩트&이슈체크에서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제공하고 있음³⁰⁾
- 소비자와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업자의 거짓 광고가 문제로 대두하였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에 관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³¹⁾
 -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집중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도 시정요청³²⁾
 - 주요 사례로는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³³⁾,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³⁴⁾ 등이 있었음

□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등 조치

-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비말감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음
 -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각 급 학교의 개학이 연

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코로나19팩트&이슈체크’ (<http://ncov.mohw.go.kr/factBoardList.do?brdId=3&brdGubun=33> 최종방문, 2020.4.22.)

31) 아시아경제(2020.2.18.), 공정위, ‘코로나19’ 거짓·과장 정보 점검...블루원 등 과장광고업자6곳 ‘경고’

32)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3.9.),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33)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3.9.),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34)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3.9.),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 기되었고 개학도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시도가 이루어짐³⁵⁾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는 휴원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여 현재에도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³⁶⁾ 조손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필수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³⁷⁾

3. 정부조치의 법적 근거와 법제 동향

□ 보건위생용품 수급안정화 조치

- 보건위생용품의 수급관련 정부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음
 -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억제와 함께 공급확대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바, 수요억제를 위한 공적 마스크 물량확보, 수출억제 등의 수단이 활용되었음
 - 코로나19에 방역을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보건위생용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35) 교육부 블로그, Q&A로 알아보는 2020 신학기 온라인 개학 (<https://blog.naver.com/moeblog/221899104563>, 최종방문, 2020.4.23.)

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코로나19택트&이슈체크'

3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3.9.),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매점매석금지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로 상세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물가안정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을 목적³⁸⁾으로 한 법률로서, 1975년 제정당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1980년 공정거래법이 분법되어 1995년에 현재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³⁹⁾
 - 동법 제7조는 사업자의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매점매석 행위의 구체적 행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⁴⁰⁾
 - 이에,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매점매석행위의 판단기준을 고시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⁴¹⁾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²⁾
 - 단속실적의 취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

3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39) 김운정, 앞의 글, p.9

4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賈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 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42)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함

-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를 근거로 하였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최고가격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시장개입의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⁴³⁾
 - 이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요의 폭증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지게 되었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부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임대료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를 주무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제1호~제3호에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⁴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물품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조정조치⁴⁵⁾를 할 수 있도록 규정⁴⁶⁾
 -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하며 주무부장관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때는 그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해야 함⁴⁷⁾

43) 같은 견해로 김윤정, 앞의 글, p.13

4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은 정부가 최고가격을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하여 이 조치가 비상시에만 제한된 기간동안 활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음

45) 여기에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가 있음.

46) 긴급수급조정조치는 5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취해지며, 긴급수급조정조치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3항 참조

4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코로나19 관련 정부조치 및 법제 동향

- 이러한 법령상 근거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가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생산업자의 신고, 출고의무,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신고 및 승인, 공적판매처의 의무, 생산 확대 명령, 마스크 수출금지, 손소독제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등이 포함됨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공포되어 별도로 규율되고 있으며, 여기에도 생산업자·판매업자의 신고의무,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수출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음
- 한편, 보건위생용품 수출금지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⁸⁾
-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표 5〉 보건위생용품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및 근거규정

정부 조치	행위형식	근거규정
매점매석 행위 금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긴급수급 조정조치 (수출금지 포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 서비스 분야 소비자계약의 위약금 분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 분야 소비자계약의 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별도 조치가 있지는 않았지만,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음

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따라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우선 적용됨
- 국외여행업, 예식업, 외식서비스업, 국내 숙박업 등의 위약금 분쟁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각각의 경우 해제 시기(예컨대, 예식업의 경우 예식예정일 90일전, 60일 전 등)에 따라 위약금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⁴⁹⁾

□ 거짓정보 유통에 관한 규제

○ 코로나19로 인한 거짓정보 유통에 관하여 정부는 수사기관, 행정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감독 및 처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거짓정보 유통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⁵⁰⁾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⁵¹⁾

- 수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정보 유통행위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관하여 구속수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⁵²⁾

○ 코로나19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업자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49) [울촌의 Law Mentoring]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중앙일보(2020.3.10.), '위약금 분쟁' 8배로...코로나 19,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나

50) 매일안전신문(2020.4.24.), 코로나19 “가짜뉴스” 맘카페 통해 유포자 49명 검거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52) 매일안전신문, 앞의 기사.

여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정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 및 시정 조치가 있었음

-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⁵³⁾
- 식품, 건강식품 등에 있어서 코로나19 효과가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⁵⁴⁾

□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등 조치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하나로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각 급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⁵⁵⁾
 -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 등이 휴업 또는 휴교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⁵⁶⁾
-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개인정보로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수집·이용 및 제 공할 수 없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함
 -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53) 현재 코로나19의 실체와 이의 퇴치에 관하여는 명확한 과학적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코로나19를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있다는 광고는 실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아주경제(2020.3.6.), 코로나에 효과 100%? 그런 제품 없다... 허위과장 광고 극성

5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55)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됨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

확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있음

□ 법제 동향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이 개정되었음
 - (검역법)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검역감염병 접촉자’로 정의하여 증상이 아닌 접촉을 기준으로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오염지역이란 용어를 ‘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또는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상태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음⁵⁷⁾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부과, 감염병환자 외에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자가시설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단체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 마련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⁵⁸⁾
 - (의료법) 의료관련감염 정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관련감염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규정 및 예방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관련감염병과 「의료법」상 병원감염이 혼용되어 이를 통일하였음⁵⁹⁾

57) 이준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한국법제연구원 Issue Paper 20-01, p.18

5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U0WOP2B1Q9V1G7J0L1L2U6M0A6F9, 최종방문, 2020.4.24.)

59) 이준서, 앞의 글, p.22

4. 나가는 말

- 작년 12월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이제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그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와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관하여 여러 논란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변화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있음
 - 이는 법적 측면에서도 유효하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 입법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보건위생용품의 매점매석 문제, 특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위약금 분쟁, 거짓정보의 유통 등이 주로 등장하였고, 정부의 조치도 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 졌음
 - 이러한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기존 법체계의 틀 내에서 정부조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인 모범이 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문제는 법제적인 측면에서 향후 검토해야할 과제도 남기고 있는 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법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계약의 위약금 분쟁의 경우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⁶⁰⁾, 향후 유사사례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하여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60) 매일경제신문(2020.3.10.), [매경포럼] 위약금과 레인체크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인권위원회의 지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있어서 확진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감염병 예방이란 공익 사이의 균형 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함

- ※ 최근 EU 개인정보 규제기관 협의체인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동경로 추적과 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고⁶¹⁾, 코로나19 관련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음⁶²⁾⁶³⁾

61) EDPB, Guidelines 04/2020 on the use of location data and contact tracing tool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62) EDPB, Guidelines 03/2020 on the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ealth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63) 최근 우리나라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김윤정(2020), 코로나19 관련 법제이슈 마스크 가격폭등 및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방법과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Issue Paper 20-02
- 이준서(2020),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한국법제연구원 Issu Paper 20-01
- EDPB, Guidelines 04/2020 on the use of location data and contact tracing tool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 EDPB, Guidelines 03/2020 on the processing of data concerning health for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약사회(2020), 마스크수급 안전화 대책
- 한국소비자원(2020), 1372소비자상담센터 내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20),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3월 10일자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2020),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2020년 4월 16일자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20),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3월 9일자 보도자료
- 한국소비자원(2020),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한국소비자원 2020년 3월 9일자 보도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http://ncov.mohw.go.kr>)

해외문화홍보원(<http://www.koci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법제처(<https://www.moleg.go.kr>)

교육부 블로그(<https://if-blog.tistory.com/>)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중앙일보(2020.3.12.), WP칼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 강점 보여줘

한겨레(2020.3.3.), 4500원짜리 마스크 이유 있었네...국세청, 52곳 세무조사

연합뉴스(2020.2.13.),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국내 하루 생산량의 41%

파이낸셜 뉴스(2020.3.4.), ‘마스크 사재기’ 각국 극약처방...‘징역 20년·사형·벌금 530만원’

헤럴드 경제(2020.3.4.), 각국도 마스크 조달 초비상...이란, 마스크 사재기에 최대 교수형 등

헬스컨슈머(2020.3.20.), ‘WHO 팬데믹 선언, 그게 뭐 길래?’

연합뉴스(2020.3.15.), “과도한 코로나 위약금 약관 고쳐라”...공정위, 칼 빼다.

중앙일보(2020.4.20.), 코로나19, ‘플랫폼 책임’을 묻다...달라진 미 빅테크

연합뉴스(2020.4.9.), ‘인포데믹’으로 변이한 코로나19...전 세계 음모론 몸살

경북일보(2020.2.19.), 대구·포항·구미,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난무...“모두 거짓”

아시아경제(2020.2.18.), 공정위, ‘코로나19’거짓·과장 정보 점검...블루원 등 과장광고업자
6곳‘경고’

[울촌의 Law Mentoring]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중앙일보(2020.3.10.), '위약금 분쟁' 8배로...코로나19,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나

매일안전신문(2020.4.24.), 코로나19 “가짜뉴스” 맘카페 통해 유포자 49명 검거

아주경제(2020.3.6.), 코로나에 효과 100%? 그런 제품 없다...허위과장 광고 극성

매일경제신문(2020.3.10.), [매경포럼] 위약금과 레인체크